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935
----------	-----

제안년월일 : 2009년 7월 3일
제안자 : 교육문화위원장

1. 주문

- 지난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고, 특히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가 분리된 이중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제도와 교육위원회 설치방식을 개편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기 위하여 2006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었음.
-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은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시·도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만, 동 법률의 내용 중 지방의회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지난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선거부정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구의 이중구조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2006년 12월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었음.
- 개정된 동 법률에 따라 일부 지역의 교육감이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기는 했지만, 2010년부터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직선과 동시에 의결기구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일원화되는 등 지방교육행정 및 의결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재의 법률을 준용할 경우 지방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의결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첫째, 직접선거방식을 통한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은 선거구의 광역화에 따른 막대한 선거비용과 더불어 능력있는 후보자의 입후보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둘째,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정당 가입의 제한은 주민직선제라는 정치과정을 통해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동 법률의 취지와 상치됨.

- 셋째,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규정은 각 시·도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에서 회의록의 작성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 넷째,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타 상임위원회 사무직원과의 의사소통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청 소속 직원이라 할지라도 인사와 급료를 제외한 각종 복무규정은 사무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 교육청 직원의 사기저하와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
- 다섯째,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경력에 있어서 교육감의 경력이 5년으로, 교육위원의 경력이 10년으로 규정됨으로써 오히려 교육의 전문성이 중시되는 교육감의 경력이 교육위원의 경력보다 경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여섯째, 교육전문가의 범위를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으로 제한함으로써 교육전문가의 범위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기타 교육전문가의 참여를 봉쇄하는 결과가 되고 있음.
- 일곱째, 현존하는 교육위원회에 비해 신설되는 교육위원회에 배속되는 교육위원 정수가 지나치게 축소됨에 따라 교육·학예에 대한 전문성 결여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과 신설되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9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없음

4. 이송처

-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5. 첨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지난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고, 특히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가 분리된 이중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제도와 교육위원회 설치방식을 개편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기 위하여 2006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은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시·도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만, 동 법률의 내용 중 지방의회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한다.

첫째, 직접선거방식을 통한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은 선거구의 광역화에 따른 막대한 선거비용과 더불어 능력있는 후보자의 입후보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의원의 선거방식을 정당 비례대표로 선출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정당 가입의 제한은 주민직선제라는 정치과정을 통해 교육의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동 법률의 취지와 상치되므로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정당가입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한다.

셋째,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규정은 각 시·도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에서 회의록의 작성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의록의 작성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다.

넷째,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타 상임위원회 사무직원과의 의사소통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청 소속 직원이라 할지라도 인사와 급료를 제외한 각종 복무규정은 사무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 교육청 직원의 사기저하와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과 일치시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되, 사무직원 중 필요에 의해 교육행정직지방공무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한다.

다섯째,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경력에 있어서 교육감의 경력이 5년으로, 교육의원의 경력이 10년으로 규정됨으로써 오히려 교육의 전문성이 중시되는 교육감의 경력이 교육의원의 경력보다 경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의원은 5년, 교육감은 10년으로 경력을 각각 조정한다.

여섯째, 교육전문가의 범위를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으로 제한함으로써 교육전문가의 범위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기타 교육전문가의 참여를 봉쇄하는 결과가 되고 있으므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교육관련 심의·의결기관에서 의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이나 교육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도 교육전문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일곱째, 현존하는 교육위원회에 비해 신설되는 교육위원회에 배속되는 교육의원 정수가 지나치게 축소됨에 따라 교육·학예에 대한 전문성 결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현재의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정수만큼의 교육의원 정수를 보장한다.

여덟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선거의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교육감의 위법행위나 정책추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한다.

2009. 7.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